

계 약 갱 신 거 절 통 지 서

임대인 성명		임차인 성명	
주 소		주 소	
연 락 처		연 락 처	
임차목적물 주소			
임대차계약 기간	20__년 __월 __일 ~ 20__년 __월 __일		

임대인()은 임차인()에게 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와 함께 통지합니다.

계약갱신거절 사유 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의3 제1항 각 호)

- ☐ 1.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☐ 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- ☐ 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(상당한 보상의 내용 :)
- ☐ 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(轉貸)한 경우
- ☐ 5.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- ☐ 6.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7.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☐ 7-1.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

☐ 7-2. 건물이 노후·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

☐ 7-3.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
- ☐ 8.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(실거주자 성명·관계 :)
- ☐ 9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※ 거절 사유를 선택하세요.

위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보충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정

※ 선택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 등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, 해당 자료를 이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.

20__년 __월 __일

임대인 : (인)

귀하

※ 거절통지의 효력은 이 통지서를 작성·발송한 후 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. 임대인의 통지 기간(계약 종료일 기준): 임대차 종료일을 입력하면 표시됩니다. 이 양식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2의 항목을 따릅니다.